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782
----------	-------

발의연월일 : 2025. 7. 28.

발 의 자 : 송재봉 · 이병진 · 전종덕
백승아 · 이수진 · 김문수
김우영 · 강준현 · 남인순
이용선 · 이광희 · 황명선
박홍배 · 최혁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합성니코틴 사용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구입·사용 가능하고,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이 불가능하도록 담배자동판매기에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금연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봉의원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7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전자식별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에 관한 정보가 있는 신분증을 인식하고 그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이하 “성인인증장치”라 한다)”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담배”로 한다.

제9조의3을 삭제한다.

제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6(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의 제조 등 금지)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또는 니코틴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7(흡연에 관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담배의 종류별, 품목별 판매현황

2.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담배의 종류별, 품목별 현황
3. 그 밖에 금연과 관련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

제3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향물질 첨가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u>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u> 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전자식별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의 나이에 관한 정보가 있는 신분증을 인식하고 그 신분증의 진위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치(이하 “성인인증장치”라 한다)</u> -----.
④ ~ ⑨ (생략)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전자담배</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형태 등은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의2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담배 ----- ----- -----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의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
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
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
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
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
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삭 제>

제9조의6(가향물질이 첨가된 담
배의 제조 등 금지) 제조자등
은 담배에 연초 또는 니코틴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이 첨가된
담배를 제조하거나 판매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9조의7(흡연에 관한 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담배의 종류별, 품목별 판매
현황
2.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담배의
종류별, 품목별 현황
3. 그 밖에 금연과 관련한 정책

제31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2. (생략) 3.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 <u>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 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 에 사용한 자</u> 4. (생략) ② ~ ⑤ (생략)	<u>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6을 위반하여 가향물 <u>질을 첨가하거나 판매한 자.</u> 2. 제21조를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개한 자</u> 제34조(과태료)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